

# CMS Plus 이용 계약서

(이하 “고객”이라 합니다)과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은 고객이 은행의 CMS Plus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합니다) 이용 및 CMS System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(이하 “이 계약” 또는 “이 계약서”라 합니다)을 체결합니다.

## 제1조 (목적)

이 계약은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및 CMS System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제18조(준용규정)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- “CMS System”이라 함은 서비스의 일부로 고객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은행시스템과 서비스 및 서비스와 고객 시스템과의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산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
- “고객 시스템”이라 함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ERP, MIS 등을 포함한 전산 시스템을 말합니다.
- “통신회선”이라 함은 은행시스템과 CMS System간 통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회선, VAN, 일반 회선을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라 함은 본 서비스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계좌”라 함은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관련 계좌, 증권관련 계좌(위탁계좌, MMF, CMA 등), 신용카드 관련 등을 말합니다.
- “장치”라 함은 은행이 제공하는 “서비스”와 “CMS System” 이용을 위해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한 “은행” 소유의 제5조 제⑤항 제4호의 하드웨어를 말합니다.

## 제3조 (서비스의 범위)

이 계약에 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-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계좌 및 금융정보의 통합조회를 포함한 계좌통합서비스
- 은행이 인터넷뱅킹 서비스, 펌뱅킹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를 선별하여 구성한 표준화된 전자 금융 거래
- 고객 시스템과 CMS System과의 각종 금융거래 데이터 연계
- 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태로 제공하는 전자금융 및 자금관리서비스
- 은행과 고객이 별도 약정한 거래
- 제 1호 ~ 제5호의 거래내용에 대한 조회
- 제 1호 ~ 제5호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
- 제 1호 ~ 제5호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임대 제공

## 제4조 (서비스의 지정)

- 은행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서비스와 그와 관련된 제3조 제6호 및 제7호를 고객에게 기본으로 제공하며, 이용할 전자금융 거래는 고객이 정합니다.
- 고객이 제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하여 정합니다.
- 고객이 이용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가 별도의 이용 약정을 요구하는 경우, 고객은 은행과 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합니다.
- 고객이 이용하고자 하는 제3조 제8호의 ‘하드웨어 임대 제공’에 관한 결정은 은행이 정합니다

## 제5조 (CMS System 등의 설치)

- 고객과 은행은 제4조에서 정한 서비스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각의 책임하에 적기에 필요한 조치(프로그램 설치, 개발 등)를 하여야 합니다.
- 은행은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적 지원은 무상으로 제공하며,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.
-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회선, 전용 회선, 전산기기(서버, PC등), DBMS(Database Management System) 등의 전산자원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준비하여야 하며, 이는 은행이 제시하는 권고 사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고객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, DBMS 등이 설치될 고객의 전산환경에 대한 보안수준은 은행이 제시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은행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-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위한 Screen Scraping 솔루션
  - 제3조 제2호의 서비스 프로그램



- 3. 서비스 관리 및 운영 module 등
- 4. 제3조 제8호의 '하드웨어 임대 제공'

구분	부품명	명세	수량	비고
H/W	Server			랙형, 탁위형
	PC			키보드, 마우스 포함
	모니터			
기타				
설치장소				

⑥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한 제⑤항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별도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은행에 있으며, 은행은 고객에게 이 계약 기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.

#### 제6조 (서비스의 이용개시)

- ① 고객은 제5조에서 정한 CMS System 등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,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은행에 서비스의 개시를 요청 합니다.
- ②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서비스, 펌뱅킹 서비스 등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이에 관한 정보를 CMS System 등에 등록합니다.

#### 제7조 (서비스의 이용)

- ① 고객은 은행과 "이 계약"을 체결하고, 은행이 제공하는 이용절차에 따라 "CMS Plus 이용신청서"를 작성하여 은행에 신청합니다.
- ② 이용절차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, 펌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절차 및 기준에 따릅니다.
- ③ 고객은 이용자의 퇴사 또는 담당직무의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, 서비스 변경/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④ 고객은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거래가 처리되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.
- ⑤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처리를 위한 기능만을 제공하는 경우, 동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이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8조 (서비스의 이용시간)

- ①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 무휴로 합니다.  
다만, 서비스에 은행의 인터넷뱅킹, 펌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해당 서비스의 제공 시간 이내로 합니다.
-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관련된 거래(조회, 이체 등)는 당해 금융회사의 정책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의 정책 또는 사정에 따릅니다.

#### 제9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조회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, 은행은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.

#### 제10조 (서비스 이용 대가의 지급)

- ① 은행은 "이 계약"의 계약기간중에 이용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변경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하며, 고객은 은행이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의 수용 여부를 회신하기로 합니다.
- ② 고객은 서비스 이용 개시 후 그 이용 대가로 매월(금 \_\_\_\_\_ 원정)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은행이 고객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추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 (금 \_\_\_\_\_ 원정)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, 고객은 서비스 이용 개시 이전에 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④ 제2항의 월별 이용 대가는 다음달 10일(공휴일인 경우 은행의 익영업일)에 납부하기로 하며, 은행은 은행에 개설된 다음의 계좌에서 그 대가를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시 없이 인출합니다.  
(인출계좌번호 : \_\_\_\_\_, 예금주 : \_\_\_\_\_)
- ⑤ 납부하지 않은 수수료(제2항의 서비스 이용대가)에 대해서는 납부할 날의 익일 부터 납부 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일 현재 은행이 고시한 원화대출 연체 이자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



- ⑥ 고객이 제2항의 이용 대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은행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⑦ 이 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는 이 계약의 효력 상실일에 제4항에서 정한 고객의 수수료 인출계좌에서 인출하기로 합니다.
- ⑧ 제4조에서 정한 서비스에 포함되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, 펌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의 기준과 납부방법 등은 그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별 계약 또는 은행이 정하여 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- ⑨ 제5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하드웨어의 설치, 회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임대료는 무상으로 합니다.

**제11조 (장치, 서비스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관리)**

- ① 고객은 은행이 제공한 장치, 프로그램 등을 제3자에게 대여, 위탁 또는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② 은행은 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서비스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.
- ③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장치, 프로그램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.
-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합니다.
  - 1. 고객이 제6조 제②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
  - 2.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설치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CMS System 에 저장되는 정보와 CMS System 과 연결된 고객의 PC 등에 저장되는 정보
  - 3. 고객이 등록한 이용자ID, 결제단계 등 이용환경 정보와 업무권한, 계좌권한 등 내부통제 정보

**제12조 (책임과 의무)**

- ①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구축한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, 은행이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이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② 고객은 제5조 제4항의 보안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보안 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과 사전 협의 하기로 합니다.
-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Screen Scraping 솔루션 및 관련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, 이를 훼손시키거나 변경하지 못하며,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사본을 만들 수 없습니다.
- ④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보관하고 정리하여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⑤ 고객은 서비스의 가동 상황과 주기적으로 처리하도록 설정한 전자금융거래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,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⑥ “은행”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“은행”의 부담 하에 보수합니다. 단, “고객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치를 수리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“고객”의 부담으로 합니다.

**제13조 (면책 및 손해배상)**

-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이 계약의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, 그 상대방이 입은 직간접 또는 잠재적인 손실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- 1. 관련 법령, 규제조치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
  - 2.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기기, 통신회선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,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
-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고객에게 발생한 직간접 또는 잠재적인 손실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- 1. 고객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, 이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- 2. 은행이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
  - 3.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도용이나,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
  - 4. 고객의 착오 또는 오류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인 경우
  - 5. 다른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서비스, 펌뱅킹 서비스 등의 장애, 정지, 해지로 인한 거래불능의 경우
  - 6. 고객이 CMS System 또는 고객 PC 등에 등록한 인터넷뱅킹 서비스, 펌뱅킹서비스 등의 정보, 계좌관련 정보 등이 상이하거나 수정되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
  - 7. CMS System 또는 고객 시스템 및 고객의 이용자 PC 등에서 제6호 및 제6조 제2항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
- ③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한 제5조 제5항의 임대자산을 “고객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치의 분실, 망실, 결함, 정보유출,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일체의 처분행위 등으로 인해 “은행”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, “고객”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.

**제14조 (비밀유지)**



